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8월 10일

군산시 조례 제2462호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중 “「군산시 포상 조례」”를 “「군산시포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지원범위) (생략)	제2조(지원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 <u>군산시 포상 조례</u>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 ----- ----- ---- 「 <u>군산시포상조례</u> 」-----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6년 8월 10일

군산시 조례 제2463호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단서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을 “종교시설, 공동주택, 상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을”을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이란 관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상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상가는 20면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리주체”란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4. ----- ----- -----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
5. “개방주차장”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공공기관, 학교, <u>종교시설</u> 및 <u>공동주택</u> 등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5. ----- ----- ----- <u>종교시설</u> , <u>공동주택</u> , <u>상가</u> ----- -----.
제3조(지원대상 및 요건) 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나목에서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u>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u> ”이란 학교, <u>종교시설</u> , <u>공동주택</u> 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요건) ① ----- ----- ----- <u>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u> ”이란 관내 공공기관, 학교, <u>종교시설</u> , <u>공동주택</u> , <u>상가</u> 를----- -----.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② -----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
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1. (생략)

2. 주간 또는 야간에 10면 이상의
주차장을 3년 이상 개방할 것
<단서 신설>

3.·4. (생략)

③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 . 단, 상
가는 20면 이상으로 한다.

3.·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